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사업장폐기물 위탁 운반 및 처리 용역 단가 계약』

#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19. 1.



부천대학교  
BUCHEON UNIVERSITY

# 견적제출 안내 공고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견적사항 : 2019년도 부천대학교 소사캠퍼스 사업장폐기물 위탁 운반·처리 용역 단가 계약
- 나. 용역기간 : 2019년 3월 1일 ~ 2020년 2월 29일 (12개월)
- 다. 용역대상 : 부천대학교 사업장폐기물 위탁 운반 및 처리
- 라. 예상금액 : 금 25,410,000원(부가세 포함, 예상배출량 60톤/년)  
※폐기물 배출량은 변경 될 수 있음.

## 2.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업체
-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허가 업체
- 다. 제3자 업체 폐기물 처리 위탁 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 업체
- 라.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된 사업장이 서울, 경인지역 내에 있는 업체
- 마. 다음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 1)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사업자

## 3. 현장설명(현장방문)

- 가. 과업지시서로 같음

## 4. 견적서 제출 방법

- 가. 제출기간 : 2019년 1월 25일(금) 15시까지
- 나. 제출방법 : 1336024@bc.ac.kr (PDF파일로 메일 제출)
- 다. 유의사항 :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5. 제출서류

- 가. 운반비 견적서 1부.
  - 나. 폐기물 톤당 처리비 견적서 1부.
  - 다. 실적증명서 1부.
  - 라.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마.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바. 사업자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 허위·위조 사실 발견 시 차순위 업체 계약

## 6.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일시 : 2019년 1월 25일(금) 15:10
- 나. 장소 : 부천대학교 총괄처 행정지원팀 담당자 PC

## 7. 견적의 무효

본 대학 물품조달 및 계약규정 제33조에 의한 입찰참자가격이 없는 자의 제출 등

## 8. 낙찰자 결정

- 가. 총액 견적방식으로 최저가격 제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나. 낙찰금액이 예정가격 기준 대비 현저하게 낮을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내역서 검토 후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10.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의 입찰은 내역서(산출포함)를 포함한 내역입찰로 VAT를 포함한 금액이어야 한다.
- 나. 본 사업에 대한 내역서는 운반 거리, 횡수, 수거량 등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견적자는 본 사업에 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 제출 전에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의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다.
- 라. 제출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물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견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소사캠퍼스 총괄처 행정지원팀(032-610-8404)으로 문의 요함.



2019. 1. 21.

부 천 대 학 교 총 장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천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천대학교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천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